

목 차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1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2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3 |
|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3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 3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입인) | 3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3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 4 |
| 가. 권유기간..... | 4 |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4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5 |
|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5 |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 5 |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5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6 |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6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 6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6 |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7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7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8 |
| □ 재무제표의 승인 | 8 |
| □ 이사의 선임 | 66 |
| 확인서..... | 77 |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82 |
| 확인서..... | 84 |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85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3월 06일

권 유 자: 성 명: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수표동, 시그니처타워스 서울)
전화번호: 02-6961-1114

작 성 자: 성 명: 권은미
부서 및 직위: IR팀 / 차장
전화번호: 02-6961-127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 | | |
|--------------------------------------|-------------------------|---------------|---------------|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 가. 권유자 |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5년 03월 06일 | 라. 주주총회일 | 2025년 03월 25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5년 03월 11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인터넷 주소)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 | | |
|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 | | |
| <input type="checkbox"/>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 | | |
|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 의결권 있는 주 식(보통주) | 4,373,834 | 16.0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소유주식은 자기주식이므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소유 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기준임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박찬구 | 최대주주의 친인척 |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 2,039,629 | 7.46 | 최대주주의 친인척 | - |
| 박준경 | 최대주주의 친인척 |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 2,183,120 | 7.99 | 최대주주의 친인척 | - |
| 박주형 | 최대주주의 친인척 |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 314,334 | 1.15 | 최대주주의 친인척 | - |
| 박철완 | 최대주주 |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 2,599,132 | 9.51 | 최대주주 | - |
| 박은형 | 최대주주의 친인척 |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 129,400 | 0.47 | 최대주주의 친인척 | - |
| 박은경 | 최대주주의 친인척 |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 129,400 | 0.47 | 최대주주의 친인척 | - |
| 박은혜 | 최대주주의 친인척 |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 150,700 | 0.55 | 최대주주의 친인척 | - |
| 김형일 | 최대주주의 친인척 |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 25,875 | 0.09 | 최대주주의 친인척 | - |
| 허경수 | 최대주주의 친인척 |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 16,677 | 0.06 | 최대주주의 친인척 | - |
| 백종훈 | 당해회사 임원 |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 7,000 | 0.03 | 당해회사 임원 | - |
| 온용현 | 계열회사 임원 |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 1,500 | 0.01 | 계열회사 임원 | - |
| 김선규 | 계열회사 임원 |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 1,000 | 0.00 | 계열회사 임원 | - |
| 송유선 | 계열회사 임원 |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 2,489 | 0.01 | 계열회사 임원 | - |
| 이정복 | 계열회사 임원 |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 2,100 | 0.01 | 계열회사 임원 | - |
| 구자성 | 계열회사 임원 |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 3,299 | 0.01 | 계열회사 임원 | - |
| 계 | - | - | 7,605,655 | 27.82 | - | - |

※ 상기 소유 주식수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됨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박성재 |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 7 | 직원 | - | - |
| 윤성욱 |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 15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소달리앤코 코리아 유한회사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 (주)한국의결권대행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소달리앤코 코리아 유한회사 | Alvise Recchi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삼성동 아셈타워) |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의결권 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02-6001-3336 (정성엽 한국대표) |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주)한국의결권대행 | 최창윤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75, 9층 903호(석수동)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 031-474-5525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5년 03월 06일 | 2025년 03월 11일 | 2025년 03월 25일 | 2025년 03월 25일 |

※ 권유 종료일은 2025년 03월 25일 제48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 |
|----------------------------------|
| 2024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보통주 보유 전체주주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당사는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사회 제안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위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회사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주주환원 달성을 위해 2025년 2월 10일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매출성장률 6%, 2030년까지 ROE 10%, 2026년까지 주주환원률 30~40%(별도 기준)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주주환원 계획에 따라 제48기 결산 배당은 이를 기준으로 573억원의 현금 배당안을 마련하였으며 자기주식 취득(500억원, 소각목적)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제48기 주주환원 전체 규모는 총 1,073억원으로 당기순이익 기준 41.1%입니다.

더불어 2024년에 발표한 향후 3개년 기보유 자기주식의 50% 소각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75,000주 소각할 계획입니다. 잔여 자사주 50% 물량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 장기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향후 석유화학 기업의 워크아웃, 기업 혹은 업종 간의 M&A 등을 위한 재무 유동성 확보 및 중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성과를 보다 장기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부문별 전문성(재무/금융, ESG, 법률/정책 등)을 고려한 이사회 구성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10명의 이사(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7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절반인 5명의 이사(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4인)를 제4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규 또는 재선임하고자 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을 고려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재선임 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평가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회사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제안한 이사 후보자는 미래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후보자입니다. 주주님께서도 이사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를 일괄적으로 선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중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안도 적극 찬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주님들의 상세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당사 홈페이지에 '제48기 정기주주총회 참고자료'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kkpc.com>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 |
|--------------------------------|---|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금호석유화학 | https://www.kkpc.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타워스 동관 12층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경영지원팀 (우편번호 04542)
- 전화번호 : 02-6961-1446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5년 3월 11일 ~ 3월 25일 제48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 |
|-----|------------------------------------|
| 일 시 | 2025년 03 월 25 일(화) 오전 9 시 |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100 시그니처타워스 동관 4층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 |
|--------------|---------|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 |
|--------------|---------|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
|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48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금호석유화학은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 7조 1,550억원, 영업이익 2,728억원, 당기순이익 3,486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과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중국 및 중동의 석유화학 산업 확대 등으로 특히, 석유화학 업계는 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당사는 제품별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동종업계 대비 견조한 이익 수준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전방산업 수요 감소와 중국 증설 물량의 시장 유입, 그리고 해상 운임 상승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당사는 재무 안전성을 유지하며 수익성을 방어함과 동시에, 성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합성고무 부문에서는 NB-Latex 23만 5천 톤 증설을 완료하고 생산 및 판매를 본격화하였으며,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기존 범용제품 생산라인을 SSBR 생산라인으로 전환하는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호미쓰이와 금호폴리켄은 각각 MDI 20만 톤과 EPDM 6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충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 ·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 ·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

제48(당)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47(전)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및 종속기업들

(단위 : 원)

| 과 목 | 제48(당)기말 | | 제47(전)기말 | |
|----------|----------|-------------------|----------|-------------------|
| 자산 | | | | |
| Ⅰ. 비유동자산 | | 5,629,299,643,493 | | 5,408,287,071,170 |

| | | | | |
|-------------------|-------------------|-------------------|-------------------|-------------------|
| 유형자산 | 4,101,539,761,816 | | 3,964,986,682,250 | |
| 사용권자산 | 75,788,098,737 | | 74,196,168,558 | |
| 투자부동산 | 112,523,006,697 | | 83,989,918,474 | |
| 무형자산 | 38,106,806,544 | | 37,087,481,005 | |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 993,547,311,183 | | 887,689,856,083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7,131,067,472 | | 180,249,930,71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7,953,816,586 | | 55,613,254,347 | |
| 순확정급여자산 | 36,070,582,227 | | 49,991,745,834 | |
| 장기대여금및기타채권 | 15,124,557,785 | | 15,929,934,148 | |
| 이연법인세자산 | 48,893,071,994 | | 55,966,942,478 | |
| 기타비유동자산 | 2,621,562,452 | | 2,585,157,280 | |
| II. 유동자산 | | 2,710,939,308,766 | | 2,571,407,562,515 |
| 재고자산 | 958,420,279,555 | | 745,609,380,745 | |
| 파생상품자산 | 4,261,378,711 | | 2,855,310,104 | |
| 매출채권 | 868,847,945,776 | | 741,633,868,654 | |
| 대여금및기타채권 | 373,869,540,566 | | 575,142,629,571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29,285,910,593 | | 452,439,485,955 | |
| 기타유동자산 | 73,931,548,026 | | 49,683,667,956 | |
| 당기법인세자산 | 2,322,705,539 | | 4,043,219,530 | |
| 자산총계 | | 8,340,238,952,259 | | 7,979,694,633,685 |
| 자본 | | | | |
| I.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 6,037,777,043,046 | | 5,829,496,939,923 |
| 자본금 | 167,455,885,000 | | 167,455,885,000 | |
| 자본잉여금 | 403,535,295,129 | | 403,535,295,157 | |
| 자본조정 | (31,917,585,691) | | (38,186,300,246)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2,509,311,430) | | (94,969,478,818) | |
| 이익잉여금 | 5,571,212,760,038 | | 5,391,661,538,830 | |
| II. 비지배지분 | | 4,446,028,460 | | 4,522,602,381 |
| 자본총계 | | 6,042,223,071,506 | | 5,834,019,542,304 |
| 부채 | | | | |
| I. 비유동부채 | | 763,538,998,860 | | 615,741,698,820 |
| 장기미지급금및기타채무 | 102,443,036,830 | | 111,127,985,607 | |
| 장기미지급비용 | 17,960,744,710 | | 11,582,636,703 | |
| 차입금 | 427,931,288,413 | | 294,814,786,610 | |
| 리스부채 | 52,042,832,362 | | 51,402,376,187 | |
| 순확정급여부채 | 14,017,564,456 | | 9,918,728,879 | |
| 이연법인세부채 | 98,847,790,014 | | 96,057,355,163 | |
| 충당부채 | 4,008,480,167 | | 3,971,087,417 | |
| 기타부채 | 46,287,261,908 | | 36,866,742,254 | |
| II. 유동부채 | | 1,534,476,881,893 | | 1,529,933,392,561 |
| 매입채무 | 543,605,102,636 | | 493,975,747,614 | |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414,828,640,525 | | 404,373,733,750 | |
| 차입금 | 454,671,424,551 | | 527,038,252,732 | |
| 리스부채 | 10,541,469,564 | | 9,627,766,527 | |
| 파생상품부채 | - | | 2,784,764,636 | |
| 미지급법인세 | 24,530,740,664 | | 8,973,585,308 | |

| | | | | |
|----------|----------------|-------------------|----------------|-------------------|
| 총당부채 | 1,807,668,320 | | 463,316,854 | |
| 기타유동부채 | 84,430,161,480 | | 82,641,034,609 | |
| 단기금융보증부채 | 61,674,153 | | 55,190,531 | |
| 부채총계 | | 2,298,015,880,753 | | 2,145,675,091,381 |
| 부채와자본총계 | | 8,340,238,952,259 | | 7,979,694,633,685 |

-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손익계산서

제48(당)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47(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및 종속기업들

(단위 : 원)

| 과목 | 제48(당)기 | 제47(전기) |
|----------------|-------------------|-------------------|
| I. 매출액 | 7,155,003,786,012 | 6,322,528,187,782 |
| II. 매출원가 | 6,569,448,551,818 | 5,676,662,262,889 |
| III. 매출총이익 | 585,555,234,194 | 645,865,924,893 |
| 판매비와관리비 | 312,750,926,606 | 286,904,042,933 |
| IV. 영업이익 | 272,804,307,588 | 358,961,881,960 |
| 기타수익 | 121,833,650,881 | 92,157,309,455 |
| 기타비용 | 88,379,374,406 | 91,415,499,680 |
| 금융수익 | 77,488,480,681 | 74,602,457,347 |
| 금융비용 | 69,556,345,344 | 60,355,470,349 |
| 지분법손익 | 93,422,863,565 | 111,132,065,526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07,613,582,965 | 485,082,744,259 |
| 법인세비용 | 59,011,569,563 | 38,039,208,143 |
| VI. 당기순이익 | 348,602,013,402 | 447,043,536,116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 | 348,621,508,633 | 446,820,153,023 |
| 비지배지분순이익 | (19,495,231) | 223,383,093 |
| VII. 주당손익 | | |
| 보통주 기본주당이익 | 13,328 | 16,727 |
| 우선주 기본주당이익 | 13,423 | 17,019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48(당)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47(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및 종속기업들

(단위 : 원)

| 과 목 | 제48(당)기 | 제47(전)기 |
|-----------------------------|------------------|------------------|
| I. 당기순이익 | 348,602,013,402 | 447,043,536,116 |
| II. 기타포괄손익 | (13,830,481,514) | (48,723,173,559)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6,714,325,148) | (43,847,107,376)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 (18,935,596,544) | (34,412,384,84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27,565,751,309) | (7,187,195,123) |
| 지분법이익잉여금 | (212,977,295) | (2,247,527,404)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32,883,843,634 | (4,876,066,183) |
| 해외사업환산손익 | (753,644,190) | (891,996,248) |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1,780,174,366)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33,637,487,824 | (2,203,895,569) |
| III. 총포괄이익 | 334,771,531,888 | 398,320,362,557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총포괄이익 | 334,791,027,119 | 398,096,979,464 |
|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 | (19,495,231) | 223,383,093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석

제 48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및 종속기업들

1. 연결실체의 개요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 또는 '당사'라 함)와 당사가 지배하고 있는 금호피앤비화학주식회사 등 17개 종속기업(이하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및 종속기업들을 일괄하여 '연결실체'라 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1976년 12월 10일 설립되어 합성고무제품과 합성수지제품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1985년 6월 1일 한국합성고무공업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1988년 1월 22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KRX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1월 1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금호케미칼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02년 1월 1일자로 특수관계자인 금호개발주식회사로부터 화학사업부를 양수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그 동안 수차례의 유·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167,456백만원(우선주자본금 15,117백만원 포함)이고,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등이 지배기업 보통주식의 28.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외의 지분은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1-2. 중속기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 중속기업 | 금호피앤비화학(주) | 금호개발상사(주) (*1) | 금호그린바이오(주) 산(주)(*2) | 금호폴리켐(주) | 금호티앤엘(주) | 코리아에너지 발전소(주) | 철도솔라(주) | (주)강원대학교태양광 | |
| 소재지 | 한국 | 한국 | 한국 | 한국 | 한국 | 한국 | 한국 | 한국 | |
| 업종 |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 무역 및 오퍼업등 | 폐기물재활용업 |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전기관련제품 및 기타발전업 | 전기관련제품 및 기타발전업 | 전기관련제품 및 기타발전업 | |
| 결산일 | 12 / 31 | 12 / 31 | 12 / 31 | 12 / 31 | 12 / 31 | 12 / 31 | 12 / 31 | 12 / 31 | |
| 자산 | 1,840,729 | 51,882 | 5,947 | 834,450 | 175,708 | 29,110 | 4,341 | 16,531 | |
| 부채 | 227,441 | 7,299 | 3,011 | 204,188 | 41,892 | 2,784 | 255 | 2,533 | |
| 자본 | 1,613,288 | 44,583 | 2,936 | 630,262 | 133,816 | 26,326 | 4,086 | 13,998 | |
| 매출액 | 1,665,334 | 70,541 | - | 668,450 | 95,152 | 4,589 | 696 | 7,201 | |
| 당기순이익(손실) | 8,702 | 472 | (64) | 61,171 | 10,593 | 2,363 | 279 | 2,011 | |
| 투자 주식수 | 지배지분 | 21,000,000주 | 1,175,000주 | 300,000주 | 4,300,000주 | 19,710,860주 | 1,449,037주 | 712,537주 | 1,517,000주 |
| | 비지배지분 | - | - | - | - | - | 58,363주 | 400주 | - |
| | 합계 | 21,000,000주 | 1,175,000주 | 300,000주 | 4,300,000주 | 19,710,860주 | 1,507,400주 | 712,937주 | 1,517,000주 |
| 지배기업 지분율 | 100% | 100% | 100% | 100% | 100% | 96.13% | 96.07% | 96.13% | |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중속기업 | 금호리조트(주) | 케이앤에이치특수(주) 스(주)(*3) | 금호페트로홀딩스 유한공사 외 1개사 (*4),(*10) | 금호홀딩스(H.K.) 외 1개사(*5) | KUMHO PETROCHEMICAL MALAYSIA Sdn. Bhd.(*7) | PT KUMHO PETROCHEMICAL INDONESIA(*8) | KKPC AMERICA Inc(*9) | |
| 소재지 | 한국 | 한국 | 중국 | 중국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미국 | |
| 업종 | 휴양콘도 운영업 | 산업용가스 제조업 | 해외투자 지주회사 | 해외투자 지주회사 | 석유화학 제품 판매업 | 석유화학 제품 판매업 | 석유화학 제품 판매업 | |
| 결산일 | 12 / 31 | 12 / 31 | 12 / 31 | 12 / 31 | 12 / 31 | 12 / 31 | 12 / 31 | |
| 자산 | 710,099 | 14,087 | 6,877 | 101,363 | 423 | 945 | 548 | |
| 부채 | 434,227 | 7,739 | 1,553 | 133,886 | 22 | - | 193 | |
| 자본 | 275,872 | 6,348 | 5,324 | (32,523) | 401 | 945 | 355 | |
| 매출액 | 106,650 | - | 5,216 | 12,986 | 397 | 256 | 240 | |
| 당기순이익(손실) | 4,507 | (352) | 3,211 | (2,146) | 13 | 32 | 16 | |
| 투자 주식수 | 지배지분 | 17,855,000주 | 104,517주 | 3,835,380주 | (*6) | 1,161,400주 | 10,000주 | 230,000주 |
| | 비지배지분 | - | 104,515주 | - | | - | - | - |
| | 합계 | 17,855,000주 | 209,032주 | 3,835,380주 | | 1,161,400주 | 10,000주 | 230,000주 |
| 지배기업 지분율 | 100% | 50%+1주 | 100% | 100% | 100% | 100% | 100% | |

(*1) 당기 중 금호피앤비화학(주)가 금호개발상사(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2,000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지분율은 100%로 전기말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 당기 중 금호개발상사(주)가 설립출자로 3,000백만원에 신규취득하였으며, 지분율은 100%입니다.

(*3) 전기 중 설립출자로 3,200백만원에 신규취득하였으며, 당기 중 동 회사의 유상증자에 145백만원을 투자하여 지분율은 50%+1주로 변동이 없습니다.

(*4) 금호페트로홀딩스유한공사의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금호페트로홀딩스유한공사의 중속기업인 금호석유화학무역(상해)유한공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금액입니다.

(*5) 금호홀딩스(H.K.)의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금호홀딩스(H.K.)의 중속기업인 ASIANA WEIHAI COUNTRY CLUB&RESORT Co.,Ltd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금액입니다.

(*6) 연결대상 중속기업이 주식을 미발행하여 주식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7) 전기 중 설립출자로 347백만원에 신규취득하였으며, 지분율은 100%입니다.

(*8) 당기 중 지배기업과 중속기업인 금호페트로홀딩스가 설립출자로 852백만원에 신규취득하였으며, 지분율은 100%입니다.

(*9) 당기 중 설립출자로 317백만원에 신규취득하였으며, 지분율은 100%입니다.

(*10) 당기 중 지배기업의 금호페트로홀딩스 보유주식 16,889,247주의 감자대가로 22,847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지분율은 100%로 전기말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 개정서,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2-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조기퇴직률,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충당부채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석3-27'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미래와 현재의 보증의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선의 추정치는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3. 재무제표 확정

연결실체의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는 2025년 3월 6일 이사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며 2025년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당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연결실체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개정 기준서 및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 호 '보험계약'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현행이행 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보험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 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 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 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며,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 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 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 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 호 '법인세'의 회수가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 호 '법인세'(개정) 국제조세개혁 : 필라 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 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 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 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 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0년 개정)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

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3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하여야 합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0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 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 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 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약정의 조건
- 2)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3)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4)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 5)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 6) 유동성위험 정보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개정사항에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 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
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
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
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
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제표 표시'(2023 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
하여,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3)가상
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 가상자산의 수익인식
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
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
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
단하고 있습니다.

3-2.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
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
니다.

최고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배분되지 않은 항목은 주로 본사 건물과 같은 공통자산, 본사 관련
비용 및 법인세 자산과 부채입니다. 부문의 자본적 지출은 보고기간 중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영업권 제외)의 취득으로 발생한 총 원가입니다.

3-3. 연결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입니
다.

3-3-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을 포함)이며, 지배력
은 다음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배기업이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
니다.

- 피투자자에 대한 힘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보유

-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사실상 지배력 보유여부 판단시에는 1) 지배기업이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분산정도, 2) 지배기업과 다른 주주 등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3)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4)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피투자자에 대한 잠재적인 의결권은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우에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는 지배기업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를 평가할 때 자신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여부를 판단시 1) 의사결정권한의 범위, 2) 다른 당사자들이 갖는 권리, 3)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보상, 4) 다른 지분 보유에 따른 이익변동에 대한 노출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실체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일에 제공한 자산, 발행한 지분증권, 인수하거나 발생시킨 부채의 공정가치의 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조건부 대가 지급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 자산·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청산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순자산 중 비례적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사업결합이 단계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은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가 지불할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된 조건부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되지 않으며, 후속적으로 정산될 때 자본내에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와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손익은 제거됩니다. 미실현손실은 이전된 자산의 손상 여부를 우선 고려하고 제거됩니다.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되었습니다.

3-3-2.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자본거래, 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불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중 취득한 지분 해당액과의 차이는 자본에 계상됩니다. 비지배지분에 대한 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 또한 자본에 반영됩니다.

3-3-3. 종속기업의 처분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공정가치는 해당 지분이 후속적으로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의 최초 인식시 장부금액이 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전에 계상하고 있던 기타포괄손익의 금액은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를 직접 처분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인식되었던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손익 또는 자본에 반영됩니다.

3-4.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지배력은 없는 모든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내지 50%를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 기업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투자금액은 취득시 식별된 영업권을포함하며, 손상차손누계액 차감 후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투자가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중 비례적 금액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 이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의 손익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관계기업의 잉여금 변동액 중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잉여금에 인식합니다. 취득 후 누적변동액은 투자금액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이 기타 무담보 채권을 포함한 관계기업 투자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게 되면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을 위해 대납하였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마다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연결실체는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동 손상차손 금액은 손익계산서 상 '관계기업에 대한 손상차손'으로 하여 별도로 표시됩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도 그 거래가 이전된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일하게 제거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나 유의적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의 지분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5. 공동약정

공동약정은 연결실체가 다른 공동약정 참여자와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공동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약정입니다. 공동약정은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합니다.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고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약정입니다.

공동영업의 경우 공동영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공동기업의 경우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투자자산은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명시된 지분법 적용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3-6. 비지배지분과의 거래

연결회사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를 연결회사 주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중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불한 대가의차이는 자본에 계상됩니다.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또한 자본에서 처리됩니다.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상실한 후 이전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이에 따른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7. 부문별 보고

영업부문은 최고경영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별로 공시되고 있습니다(주석 4 참

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3-8. 기능통화 및 외화환산

연결실체는 재무제표를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9.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10.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

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3-11. 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12.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과 결합되어 있는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전진적으로 중단됩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전진적으로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3-13.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최초 인식후에는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기존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
| 건물 | 10 ~ 60년 | 차량운반구 | 4 ~ 10년 |
| 건축물 | 5 ~ 40년 | 공구와기구 | 4 ~ 5년 |
| 기계장치 | 2 ~ 30년 | 비품 | 2 ~ 10년 |

연결실체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14.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차입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15.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이며 폐기나 처분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1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합니다.

|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
| 산업재산권 | 5,10년 |
| 개발비 | 5년 |
| 기타의무형자산 | 5년,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함을 매 회계기간 중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후속적 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3-17. 리스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만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식별되는 자산이 존재하고,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3-17-1.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예: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며 매수선택권이 없는 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예:새것일 때의 가치가 US\$5,000정도 이하)의 경우 리스이용자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에 대한 선택은 기초자산 유형별로,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선택은 리스별로 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리스의 내재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하며,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장부금액이 측정되고, 이자비용은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인센티브는 차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로 구성되며,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합니다.

3-17-2. 리스제공자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며,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달려있습니다.

리스제공자는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초자

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자산을 리스순 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며 후속적으로 리스순투자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합니다.

3-1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고자산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19.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한 결과 발생한 손상차손과 모든 감모손실은 손상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손상차손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3-20. 금융자산의 손상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한편 최초 인식 이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21. 비금융자산의 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 급여에서 생기는 자산,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영업권을 포함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23.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24.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약정의 설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차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위내에서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이 인출될 때까지 해당 금액은 이연됩니다.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차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금액을 유동성서비스에 대하여 선지급한 것으로 자본화하며, 관련된 약정기간동안 상각됩니다.

차입금은 연결실체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25.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 측정시 최초인식 금

액의 미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하고있습니다.

3-26. 종업원급여

3-26-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아니한 급여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6-2. 퇴직급여 :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연결실체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결실체의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연결실체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가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6-3.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써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6-4. 해고급여

당사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 없이 명시적으로 약속하거나, 당사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 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3-26-5.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 이후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로서,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선의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3-28. 배당금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9. 납입자본

보통주와 상환의무 없는 우선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며,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또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3-30. 수익

수익은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3-30-1. 수행의무의 식별

고객과의 계약에서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3-30-2. 한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연결실체는 판매로 인하여 부담하는 보증책임에 대한 충당부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30-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실체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회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3-30-4. 유의적인 금융요소

연결실체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개시할 때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31.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이자수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여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충당부채의 상각액,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여 인식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32.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32-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32-2. 이연법인세

연결실체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 및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3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며, 수익관련 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34. 주당손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계산하고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전환사채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35.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연결실체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결과 발생하는 배출부채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분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이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의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의 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36. 영업권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됩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관계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3-4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5년 3월 17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제 48 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4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단위 : 원)

| 과목 | 제 48 기말 | | 제 47 기말 | |
|------------------------|-------------------|-------------------|-------------------|-------------------|
| 자산 | | | | |
| I. 비유동자산 | | 3,075,259,116,045 | | 3,092,061,261,882 |
| 유형자산 | 1,860,823,991,619 | | 1,846,958,469,663 | |
| 사용권자산 | 24,875,606,366 | | 22,358,577,622 | |
| 투자부동산 | 94,601,032,444 | | 66,926,054,236 | |
| 무형자산 | 21,253,540,215 | | 17,225,331,616 | |
|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 | 793,360,830,785 | | 809,916,778,81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6,718,414,830 | | 179,836,156,338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6,001,016,586 | | 53,640,774,347 | |
| 순확정급여자산 | 32,574,981,931 | | 43,244,551,898 | |
| 장기대여금 및 기타채권 | 8,045,215,206 | | 8,209,803,628 | |

| | | | | |
|---------------|-------------------|-------------------|-------------------|-------------------|
| 이연법인세자산 | 35,690,996,745 | | 42,605,633,234 | |
| 기타비유동자산 | 1,313,489,318 | | 1,139,130,486 | |
| II. 유동자산 | | 1,597,829,986,282 | | 1,341,696,565,366 |
| 재고자산 | 592,344,497,096 | | 444,635,599,137 | |
| 파생상품자산 | 4,261,378,711 | | - | |
| 매출채권 | 567,859,633,708 | | 469,985,328,796 | |
| 대여금및기타채권 | 58,096,231,433 | | 94,131,727,277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25,214,150,849 | | 308,548,478,389 | |
| 기타유동자산 | 50,054,094,485 | | 24,395,431,767 | |
| 자 산 총 계 | | 4,673,089,102,327 | | 4,433,757,827,248 |
| 자 본 | | | | |
| 자본금 | 167,455,885,000 | | 167,455,885,000 | |
| 자본잉여금 | 298,065,365,852 | | 298,065,365,852 | |
| 자본조정 | (31,335,219,268) | | (37,603,933,823)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08,039,653,894) | | (97,618,415,398) | |
| 이익잉여금 | 2,983,215,252,929 | | 2,885,306,700,582 | |
| 자 본 총 계 | | 3,309,361,630,619 | | 3,215,605,602,213 |
| 부 채 | | | | |
| I. 비유동부채 | | 379,845,834,045 | | 282,203,448,563 |
| 장기미지급금및기타채무 | 19,516,557 | | 19,628,279 | |
| 차입금 | 346,191,580,667 | | 256,000,000,000 | |
| 리스부채 | 19,229,743,864 | | 16,547,183,581 | |
| 장기미지급비용 | 12,742,552,803 | | 8,173,129,193 | |
| 총당부채 | 1,662,440,154 | | 1,463,507,510 | |
| II. 유동부채 | | 983,881,637,663 | | 935,948,776,472 |
| 매입채무 | 394,331,455,563 | | 372,021,223,269 | |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 175,312,654,660 | | 163,247,766,470 | |
| 차입금 | 347,730,892,653 | | 348,668,597,357 | |
| 리스부채 | 5,276,275,052 | | 5,362,853,688 | |
| 파생상품부채 | - | | 2,784,764,636 | |
| 미지급법인세 | 14,603,879,156 | | 5,471,833,899 | |
| 총당부채 | 1,202,763,554 | | 450,484,033 | |
| 기타유동부채 | 45,423,717,025 | | 37,941,253,120 | |
| 부 채 총 계 | | 1,363,727,471,708 | | 1,218,152,225,035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 4,673,089,102,327 | | 4,433,757,827,248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 4,673,089,102,327 | | 4,433,757,827,248 |

-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 48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단위 : 원)

| 과목 | 제 48기 | 제 47기 |
|----------------|-------------------|-------------------|
| I. 매출액 | 4,854,274,755,589 | 4,196,148,138,989 |
| II. 매출원가 | 4,456,519,593,472 | 3,768,541,355,633 |
| III. 매출총이익 | 397,755,162,117 | 427,606,783,356 |
| 판매비와관리비 | 208,119,757,613 | 195,038,874,794 |
| IV. 영업이익 | 189,635,404,504 | 232,567,908,562 |
| 기타수익 | 183,183,059,193 | 158,476,198,957 |
| 기타비용 | 60,554,701,597 | 55,313,988,163 |
| 금융수익 | 37,364,844,916 | 35,046,973,586 |
| 금융비용 | 48,369,218,616 | 35,091,725,125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01,259,388,400 | 335,685,367,817 |
| 법인세비용 | 40,301,814,028 | 32,713,259,256 |
| VI. 당기순이익 | 260,957,574,372 | 302,972,108,561 |
| VII. 주당이익 | | |
| 보통주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9,972 | 11,340 |
| 우선주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10,087 | 11,554 |

-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48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단위 : 원)

| 과목 | 제 48기 | 제 47기 |
|-----------------------------|------------------|------------------|
| I. 당기순이익 | 260,957,574,372 | 302,972,108,561 |
| II. 기타포괄손익 | (40,690,621,996) | (25,386,664,751)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0,690,621,996) | (25,247,616,161) |
|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 (13,127,308,437) | (18,080,885,22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7,563,313,559) | (7,166,730,933)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139,048,590) |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139,048,590) |
| III. 총포괄이익 | 220,266,952,376 | 277,585,443,810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48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과 목 | 제 48 기 (처분예정일 : 2025.3.25.) | | 제 47 기 (처분확정일 : 2024.3.22.) | |
|--|--------------------------------|-----------------|--------------------------------|-----------------|
| | | |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 224,515,252,929 | | 324,606,700,582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0,120,766,382 | | 147,046,210,325 | |
| 전기오류수정이익 | - | | - | |
| 당기순이익 | 260,957,574,372 | | 302,972,108,561 | |
| 순확정급여자산의 재측정요소 | (13,127,308,437) | | (18,080,885,228)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 으로 대체 | (17,142,075,063) | | (7,282,688,891) | |
| 자기주식의 소각 | (56,293,704,325) | | (100,048,044,185) |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 167,316,500,100 | | 274,485,934,200 |
| 이익준비금 | - | | - | |
| 임의적립금 | 110,000,000,000 | | 198,000,000,000 | |
|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보통주: 당기 2,200원(44%) 전기 2,900원(58%) 우선주: 당기 2,250원(45%) 전기 2,950원(59%) | 57,316,500,100 | | 76,485,934,200 |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57,198,752,829 | | 50,120,766,382 |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25년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석

제 48 기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이하 "당사" 또는 "회사")는 1976년 12월 10일 설립되어 합성고무제품과 합성수지제품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1985년 6월 1일 한국합성고무공업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1988년 1월 22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KRX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1월 1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금호케미칼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02년 1월 1일자로 특수관계자인 금호개발주식회사로부터 화학사업부를 양수하였습니다.

당사는 그 동안 수차례의 유·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167,456백만원 (우선주자본금 15,117백만원 포함)이고, 당기말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등 이 당사 보통주식의 28%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외의 지분은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가 소유 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 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 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 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 니다.

2-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조기퇴직률,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총당부채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석 3-2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미래와 현재의 보증의무를 제 공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총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선의 추정치는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3. 재무제표 확정

당사의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는 2025년 3월 6일 이사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며, 2025년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 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3-1-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당사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0년 개정) -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 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채 결제의 의미와결제방식을 현금, 자신 의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명확히 합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3)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 가상자산의 수익인식 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3-1-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동 개정사항은 회계목적상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평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 추정 및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동 개정사항은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금융부채를 결제할 때의 금융부채의 결제일 전 이행과 관련된 조건,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지 평가할 때고려해야 할 이자 및 우발사건 특성, 비소구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특성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 및 거래가격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리스부채 제거시 발생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거래가격의 정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일관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동 개정사항은 사실상 대리인의 판단과 관련한 기준서 제1110호의 표현을 개정하여 기준서 문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위험회피회계 적용

동 개정사항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문단을 참조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제거 손익

동 개정사항은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를 참조하도록 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 원가법

동 개정으로 ‘원가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원가’로 대체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2. 영업부문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배분되지 않은 항목은 주로 본사 건물과 같은 공통자산, 본사 관련 비용 및 법인세 자산과 부채입니다. 부문의 자본적 지출은 보고기간 중유형자산과 무형자산(영업권 제외)의 취득으로 발생한 총 원가입니다.

3-3.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4. 기능통화 및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6.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

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3-7. 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역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8. 납입자본

보통주와 상환의무 없는 우선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며,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 또는 회사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3-9.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과 결합되어 있는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회사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회사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전진적으로 중단됩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전진적으로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3-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최초 인식후에는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기존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
| 건물 | 20 ~ 40년 | 차량운반구 | 5년 |
| 구축물 | 20 ~ 40년 | 공구와기구 | 5년 |
| 기계장치 | 2 ~ 20년 | 비품 | 5년 |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11. 차입원가

당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이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에 존재하는 기업의 차입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12.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20~40년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이며 폐기나 처분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합니다.

|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
| 산업재산권 | 5,10년 |
| 개발비 | 5년 |
| 기타의무형자산 | 5년,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 중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후속적 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3-14. 리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만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식별되는 자산이 존재하고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3-14-1.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예: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며 매수선택권이 없는 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예:새것일 때의 가치가 US\$5,000정도 이하)의 경우 리스이용자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에 대한 선택은 기초자산 유형별로,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선택은 리스별로 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하며,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장부금액이 측정되고, 이자비용은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인센티브는 차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로 구성되며,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합니다.

3-14-2. 리스제공자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며, 이는 계약의 형식 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달려있습니다.

리스제공자는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며 후속적으로 리스순투자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합니다.

3-15.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고자산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16.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한 결과 발생한 손상차손과 모든 감모손실은 손상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손상차손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3-17. 금융자산의 손상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한편 최초 인식 이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18. 비금융자산의 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 급여에서 생기는 자산,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영업권을 포함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19.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20.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약정의 설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차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위내에서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이 인출될 때까지 해당 금액은 이연됩니다.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차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금액을 유동성서비스에 대하여 선지급한 것으로 자본화하며, 관련된 약정기간동안 상각됩니다.

차입금은 회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21. 종업원급여

3-21-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아니한 급여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1-2. 퇴직급여 :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법적의무나 의 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1-3.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써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1-4. 해고급여

당사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 없이 명시적으로 약속하거나, 당사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3-21-5.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 이후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로서,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최선의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3-23. 배당금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4. 수익

수익은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3-24-1. 수행의무의 식별

고객과의 계약에서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3-24-2. 한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당사는 판매로 인하여 부담하는 보증책임에 대한 충당부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24-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당사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회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3-24-4. 유의적인 금융요소

회사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 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

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 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25.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금융수익은 이자수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여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충당부채의 상각액,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여 인식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3-26-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6-2. 이연법인세

당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 및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거래 당시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27.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며, 수익관련 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28. 주당손익

당사는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하여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계산하고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 및 우선주 각각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전환사채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 및 우선주

각각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29.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당사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결과 발생하는 배출부채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분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이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의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의 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5년 3월 17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사내이사 박준경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박준경 | 1978. 04. 30. | 없음 | - | 친인척 | 이사회 |
| 총 (1)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 기간 | 내용 | |
| 박준경 | 금호석유화학 사장 | 2008-2010 | 금호타이어 회계팀 부장 | 없음 |
| | | 2010-2011 | 금호석유화학 해외영업팀 부장 | |
| | | 2012-2020 | 금호석유화학 수지해외영업 상무보/상무 | |
| | | 2020-2021 | 금호석유화학 수지영업담당 전무 | |
| | | 2021-2023 | 금호석유화학 영업본부장 부사장 | |
| | | 2023-현재 | 금호석유화학 사장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1. 후보자의 상세 약력

- 2007 고려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2010 - 2011 금호석유화학 해외영업팀 부장
- 2012 - 2020 금호석유화학 수지해외영업 상무보/상무
- 2020 - 2021 금호석유화학 수지영업담당 전무
- 2021 - 2023 금호석유화학 영업본부장 부사장
- 2023 - 현재 금호석유화학 사장

2. 이사회 추천 배경

박준경 사내이사 후보는 2010년부터 금호석유화학의 해외영업팀, 수지영업부문임원 및 영업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2022년 7월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2023년부터는 금호석유화학의 사장 및 그룹 총괄 사장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장 및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로 회사는 끊임없는 성장과 미래를 위해 핵심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전기차 타이어 용도인 합성고무 제품 SSBR 6만톤 증설을 완료하고 2025년 완료를 목표로 SSBR 3.5만톤 병행생산설비 추가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고기능성 고분자인 EPDM 6만톤, NB-Latex 23.5만톤 증설을 완료하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중국발 공급 과잉, 에너지와 물류비용 상승 등 석유화학 업계가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고부가가치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 및 지역별 맞춤 전략으로 경쟁사 대비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여 우수한 경영 능력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3대 성장 전략으로 ①친환경 자동차 솔루션 강화, ②바이오/지속가능 소재 확대, ③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전환 가속화를 선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R&D 및 투자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후보자가 3대 성장 전략의 원활한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실질적인 ESG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사내이사로서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단계적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며, ESG 위원회 활동 강화 및 협의체 운영, 컴플라이언스 개선 등 ESG 경영을 가속화하여 '2024년 한국의 경영 대상'에서 ESG 경영과 친환경경영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대외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의 성장 방향과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는데 후보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당사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자 합니다.

[2022.7.-2024년 참석률 : 이사회 100%, ESG위원회 100%, 경영위원회 100%]

[제3호 의안] 사외이사 4명 선임의 건

- [제 3-1호 의안] 사외이사 박상수 선임의 건
- [제 3-2호 의안] 사외이사 권태균 선임의 건
- [제 3-3호 의안] 사외이사 이지윤 선임의 건
- [제 3-4호 의안] 사외이사 민세진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박상수 | 1954. 02. 10. | 해당 | -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권태균 | 1955. 11. 28. | 해당 | -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이지윤 | 1956. 12. 02. | 해당 | -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민세진 | 1974. 04. 28. | 해당 | -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총 (4)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 기간 | 내용 | |
| 박상수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 1995-2019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없음 |
| | | 2012-2017 |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장 | |
| | | 2013-2016 | 하이투자증권 사외이사, 감사위원, 리스크관리위원 등 | |
| | | 2018-2020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 |
| | | 2019-현재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 |
| 권태균 |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 | 1980-1992 | 재무부 국고부, 국제금융국, 경제협력국 사무관 | 없음 |
| | | 2001-2004 |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경제참사관 | |
| | | 2004-2008 | 재정경제부 부총리 비서실장, 국제금융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 | |
| | | 2009-2010 | 제27대 조달청 청장 | |
| | | 2014-2019 | 삼성전기 사외이사, 미래에셋 사외이사 | |
| | | 2023-현재 |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 | |
| 이지윤 | - | 1998-2002 | 환경부 환경기술과 사무관 | 없음 |
| | | 2006-2007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2심의관실 과장 | |
| | | 2007-2008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혁신기획과 과장 | |
| | | 2008-2012 | 환경부 화학물질과 과장 | |
| | | 2012-2013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부이사관) | |
| | | 2012-2017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부회장 | |
| 민세진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003-2007 |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 없음 |
| | | 2007-현재 |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부교수/교수 | |
| | | 2021-2023 | 한국금융학회 이사 | |
| | | 2022-2024 |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 | |
| | | 2022-2024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
| | | 2023-현재 |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위원 | |
| | | 2024-현재 | 기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위원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
|-----|----------------|
| 3-1 | 사외이사 박상수 선임의 건 |
|-----|----------------|

1. 재무/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

본 후보자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한국재무학회 회장,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장,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다수의 상장회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등을 지낸 경험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회사가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

본 후보자는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을 포함한 대주주와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이 적법하고 투명한 책임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감독하겠습니다. 특히 재무/금융, 위험관리, 정책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회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에 기여

본 후보자는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인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사회에 참여하겠습니다. 회사의 비전 및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Vision : 화학 그 이상의 가치로 공동의 미래를 창조하는 솔루션 파트너
- Mission : 고객을 위해 - 최고의 솔루션, 최상의 시너지로 고객가치를 높임
 주주를 위해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익 극대화로 주주가치를 제고
 임직원을 위해 -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성장을 실현
 인류와 환경을 위해 - 인류와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녹색화학을 실천

4. 법적 의무 및 윤리강령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에 충실할 것이며 특히 회사가 선포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 | |
|-----|----------------|
| 3-2 | 사외이사 권태균 선임의 건 |
|-----|----------------|

1. 재무/금융, 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

본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외자정책과장, 투자진흥과장 등을 거쳐 OECD 대표부 경제참사관,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 제27대 조달청장,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 등을 지냈으며 재무, 금융 및 정책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대외활동과 이사회와 각 위원회의 선진화를 추진하여 회사와 이사회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

본 후보자는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을 포함한 대주주와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이 적법하고 투명한 책임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감독하겠습니다. 특히 법률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준법 경영에 기여하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회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에 기여

본 후보자는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인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사회에 참여하겠습니다. 회사의 비전 및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Vision : 화학 그 이상의 가치로 공동의 미래를 창조하는 솔루션 파트너
- Mission : 고객을 위해 - 최고의 솔루션, 최상의 시너지로 고객가치를 높임
주주를 위해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익극대화로 주주가치를 제고
임직원을 위해 -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성장을 실현
인류와 환경을 위해 - 인류와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녹색화학을 실천

4. 법적 의무 및 윤리강령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에 충실할 것이며 특히 회사가 선포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 | |
|-----|----------------|
| 3-3 | 사외이사 이지윤 선임의 건 |
|-----|----------------|

1. 환경, 안전/보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

본 후보자는 1983년 환경청으로 입사하여 환경부 환경기술과 사무관, 화학물질과 과장, 환경보건 정책과 과장(부이사관) 등을 역임하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환경보건/화학 산업부문의 전문가로서의 오랜 경험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환경 및 ESG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

본 후보자는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을 포함한 대주주와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이 적법하고 투명한 책임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감독하겠습니다. 특히 법률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준법 경영에 기여하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회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에 기여

본 후보자는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인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사회에 참여하겠습니다. 회사의 비전 및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Vision : 화학 그 이상의 가치로 공동의 미래를 창조하는 솔루션 파트너
- Mission : 고객을 위해 - 최고의 솔루션, 최상의 시너지로 고객가치를 높임
 주주를 위해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익극대화로 주주가치를 제고
 임직원을 위해 -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성장을 실현
 인류와 환경을 위해 - 인류와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녹색화학을 실천

4. 법적 의무 및 윤리강령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에 충실할 것이며 특히 회사가 선포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 | |
|-----|----------------|
| 3-4 | 사외이사 민세진 선임의 건 |
|-----|----------------|

1. 재무/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

본 후보자는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을 거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금융학회 이사, 한국재무관리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기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경제, 재무 정책분야의 전문가로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

본 후보자는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을 포함한 대주주와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이 적법하고 투명한 책임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감독하겠습니다. 특히 법률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준법 경영에 기여하고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회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에 기여

본 후보자는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인지하고 이를 기준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사회에 참여하겠습니다. 회사의 비전 및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Vision : 화학 그 이상의 가치로 공동의 미래를 창조하는 솔루션 파트너
- Mission : 고객을 위해 - 최고의 솔루션, 최상의 시너지로 고객가치를 높임
 주주를 위해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익 극대화로 주주가치를 제고
 임직원을 위해 - 기업과 구성원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성장을 실현
 인류와 환경을 위해 - 인류와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녹색 화학을 실천

4. 법적 의무 및 윤리강령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에 충실할 것이며 특히 회사가 선포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 | |
|-----|----------------|
| 3-1 | 사외이사 박상수 선임의 건 |
|-----|----------------|

1. 후보자의 상세 약력

- 1977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98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 1986 University of Chicago, MBA / 1990 University of Chicago, Ph.D in Finance
- 2019 -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 1995 - 2019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1998 - 2013 SKC(주)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2006 - 2007 한국재무학회 부회장
- 2006 - 2007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장
- 2006 - 2013 교보증권(주) 사외이사, 감사위원, 리스크관리위원장
- 2006 - 2008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장
- 2009 - 2012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장
- 2011 한국재무학회 제24대 회장
- 2012 - 2017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장
- 2013 - 2020 (주)LG유플러스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2013 - 2015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 자본시장분과
- 2013 - 2016 하이투자증권 사외이사, 감사위원, 리스크관리위원, 성과보상위원
- 2018 - 2020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 2022 - 현재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감사위원장)

2. 이사회 추천 배경

박상수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후보자는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역임하며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장,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 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자문위원, 다양한 업권의 상장회사(SKC, 교보증권, LG유플러스, 하이투자증권)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등을 역임한 재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내재화 및 국내 자본시장에서 스튜어드십이 확산되는데 기여한 정책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금호석유화학 이사회 참여 후, 재무, 회계, 법률 및 정책 분야 전반의 중대 업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회계 및 내부통제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3년 연결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평가 범위,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 기준 수립에 실질적인 조언을 제시하여,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고도화 하고 회사의 재무, 회계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인 지정제도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안진회계법인으로 지정되었을 때, 감사인 변경을 위한 기초 자료 준비, 분기/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철저한 내부 감사의 실시,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등 원활하게 외부 감사인 변경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사회는 후보자가 회계, 재무,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점, 지난 3년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개선하여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한 점,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만들어갈 변화를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재선임이 이사회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2022-2024년 참석률 : 이사회 100%, 감사위원회 100%, 내부거래위원회 100%]

3-2 사외이사 권태균 선임의 건

1. 후보자의 상세 약력

- 1978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1988 미국 University of Virginia 졸업(MBA)
- 2007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졸업(국제학 박사)
- 1977 제2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1980 - 1992 재무부 국고국, 국제금융국, 경제협력국 사무관
- 1992 - 1996 아시아개발은행 동남아 담당관
- 1996 - 1999 청와대 금융개혁위원회 파견, 재정경제부 외자관리과장, 투자진흥과장 등
- 1999 - 2001 청와대 정책수석실 정책1비서관실(경제) 국장
- 2001 - 2004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경제참사관
- 2004 - 2005 재정경제부 부총리 비서실장
- 2005 - 2006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장
- 2006 - 2007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 2007 - 2008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
- 2008 - 2008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실장
- 2009 - 2010 제27대 조달청 청장
- 2010 - 2013 주아랍에미리트 특명전권대사
- 2013 - 20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2014 - 2019 삼성전기 사외이사(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 2014 - 2016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외이사
- 2016 - 2018 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리스크관리위원장, 사추위)
- 2021 - 2022 포스코 사외이사(재정위원장)
- 2023 - 현재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ESG 위원회 위원장 등)
- 2022 - 현재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보상위원장)

2. 이사회 추천 배경

권태균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외자관리과장, 투자진흥과장 등을 거쳐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경제참사관,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실장, 제27대 조달청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국내 다수 상장회사(삼성전기, 미래에셋증권, 포스코 등)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재무/금융, 무역/조달, 지배구조 부문 전문가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후보자의 무역 조달 정책 부문에서의 오랜 경험과 역량은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의 원재료 조달, 해상운임 상승 등의 리스크를 긴밀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출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 경제 전망에 대한 식견을 바탕으로 신규 투자와 관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3대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0년 이상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한 후보자는 사외이사 역할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 운영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고, 이사회 의장 명의의 주주서한을 매해 정기적으로 발송해 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책 및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도 크게 확대하였고, 사외이사 후보추천 절차 또한 개편하여 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이사회 평가를 실시하여 글로벌 모범관행에 부합하는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무역/조달과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활용하여 이사회와 각 위원회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사회를 포함한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는데 책임자라고 판단되어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자 합니다.

[2022.07-2024년 참석률 : 이사회 100%, 보상위원회 100%, 내부거래위원회 100%]

3-3 사외이사 이지윤 선임의 건

1. 후보자의 상세 약력

- 1980 전북대학교 화학과 졸업
- 1982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환경보건 전공)
- 1983 환경청(환경부 전신) 입사
- 1996 - 1998 국외훈련/영국 Loughborough대학 환경공학 석사(수질관리 전공)
- 1998 - 2002 환경부 환경기술과 사무관
- 2002 - 2004 박사과정 파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환경관리 전공)
- 2006 - 2006 환경부 순환경관리대책팀장
- 2006 - 2007 국무조정실 규제개혁2심의관실 과장
- 2007 - 2008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혁신기획과 과장
- 2008 - 2012 환경부 화학물질과 과장
- 2012 - 2013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부이사관)
- 2012 환경부 퇴직(고위공무원 승진)
- 2012 - 17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상근부회장
- 2022 - 현재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ESG위원장)

2. 이사회 추천 배경

이지윤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후보자는 1983년 환경청으로 입사하여 환경부 환경기술과 사무관, 화학물질과 과장, 환경보건정책과 과장(부이사관) 등을 역임하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환경보건/화학산업 부문 전문가입니다.

후보자는 ESG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ESG 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ESG 경영체계를 내재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회사는 ESG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 대비 약 29%를 절감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탄소 중립 성장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며 TCFD기반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와 법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화학물질 규제 대응, 환경 컴플라이언스, 기후변화 대응 사안, 내부탄소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2년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안전보건 환경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매년 교육 및 시설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안전보건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후보자는 환경, 화학물질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과 통찰력을 토대로 회사의 ESG 활동과 경영체계에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고, 3대 성장전략의 한 축인 바이오/지속가능소재 확대 전략을 이행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자 합니다.

3-4 사외이사 민세진 선임의 건

1. 후보자의 상세 약력

- 1993 - 1997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 1998 - 200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경제학 박사(석/박사 통합과정)
- 2003 - 2007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 2007 - 현재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015 - 2019 한국여성경제학회 연구이사 및 편집위원장
- 2017 지능형 전력망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전문위원
- 2019 - 2022 한국경제학회 사무차장 및 이사
- 2024 - 현재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
- 2023 - 현재 한국여성경제학회 부회장
- 2022 - 2024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혁신·적극행정분과)
- 2023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주) 한국엔컴퍼니 사외이사
 (주) 신한라이프 사외이사 (~ 2025.3.21. 사임 예정)
- 2024 - 현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위원

2. 이사회 추천 배경

민세진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후보자는 미국 UCL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후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경제, 재무 및 금융분야 전문가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활동으로 업적을 쌓으신 뛰어난 후보자입니다.

최근 석유화학 업계는 불황이 지속되어 사업재편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후보자의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위원, 국민 경제 자문위원과 같은 정부 부처에서의 경제/정책 자문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경험은 당사가 석유화학사업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대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할 거라 기대합니다. 특히, 후보자는 스마트그리드, 전지산업, 전기발전산업분야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을 정도로 차세대 기술변화와 경제적 파급 효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회사가 3대 성장 전략을 이행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출산, 고용, 복지 분야에 강점을 지닌 경제 전문가로서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 일/가정 양립 지원, 임직원의 복지 및 권익 향상과 같이 회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전문 분야인 재무, 경제 외에도 정책(산업, 금융, 여성)과 지배구조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성장전략 이행과 더불어 당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후보자의 이사 선임을 통하여 회사의 이사회 구성의 여성 이사의 수가 3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성별 다양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민세진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확인서

확인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5년 02월 27일

보고자 : 박 준 경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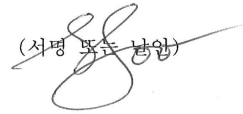
확인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보고자 : 박상수

(서명 또는 날인)



확인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5년 02월 21 일

보고자 : 권태균  (서명 및 인)
(서명 및 인)

확인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5년 02월 24일

보고자 : 이지윤

 (서명 본인)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박상수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박상수 | 1954. 02. 10. | 해당 | - | 없음 | 이사회 |
| 총 (1)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 기간 | 내용 | |
| 박상수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 1995-2019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없음 |
| | | 2012-2017 |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장 | |
| | | 2013-2016 | 하이투자증권 사외이사, 감사위원, 리스크관리위원 등 | |
| | | 2018-2020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 |
| | | 2019-현재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후보자의 상세 약력

- 1977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98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 1986 University of Chicago, MBA / 1990 University of Chicago, Ph.D in Finance
- 2019 -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 1995 - 2019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1998 - 2013 SKC(주)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2006 - 2007 한국재무학회 부회장
- 2006 - 2007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장
- 2006 - 2013 교보증권(주) 사외이사, 감사위원, 리스크관리위원장
- 2006 - 2008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장
- 2009 - 2012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장
- 2011 한국재무학회 제24대 회장
- 2012 - 2017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장
- 2013 - 2020 (주)LG유플러스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2013 - 2015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 자본시장분과
- 2013 - 2016 하이투자증권 사외이사, 감사위원, 리스크관리위원, 성과보상위원
- 2018 - 2020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 2022 - 현재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감사위원장)

2. 이사회 추천 배경

박상수 사외이사 후보자는 당사와의 거래, 경직 등에 따른 특정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후보자는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역임하며 기획예산처

, 기금운용평가단장,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 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자문위원, 다양한 업권의 상장회사(SK, 교보증권, LG유플러스, 하이투자증권)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등을 역임한 재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내재화 및 국내 자본시장에서 스튜어드십이 확산되는데 기여한 정책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후보자는 2022년 금호석유화학 이사회 참여 후, 재무, 회계, 법률 및 정책 분야 전반의 중대 업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회계 및 내부통제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2023년 연결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평가 범위,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 기준 수립에 실질적인 조언을 제시하여,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고도화하고 회사의 재무, 회계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인 지정제도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안진회계법인으로 지정되었을 때, 감사인 변경을 위한 기초 자료 준비, 분기/감사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 철저한 내부 감사의 실시,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등 원활하게 외부 감사인 변경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사회는 후보자가 보유한 회계, 재무,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점, 지난 3년간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개선하여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한 점,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만들어갈 변화를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재선임이 이사회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2022-2024년 참석률 : 이사회 100%, 감사위원회 100%, 내부거래위원회 100%]

확인서

확인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3-15조 제3항 제3호 가목, 다목, 라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5년 02월 20 일

보고자 : 박상수

(서명 또는 날인)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 |
|---------------|-------|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0(7)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65억원 |

(전 기)

| | |
|---------------|-------|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0(7)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0억원 |
| 최고한도액 | 65억원 |